

검토보고서

2024. 6. 13. (목)

순서	검토안건	제안
1	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【새마포담당관 소관】	구청장



행정건설위원회

(전문위원 유준상)

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(새마포담당관)

1. 안건명

-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(새마포담당관)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제출일자 : 2024년 5월 24일(화)
- 제출자 : 마포구청장

3. 회부일자

- 2024년 5월 28일(화)

4. 관련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45조(추가경정예산)
- 「지방재정법」 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

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

(새마포담당관)

I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

1. 마포구(총괄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액	기정예산액	증(△)감	증감률
합 계	895,768,447	847,789,455	47,978,992	5.66%
일 반 회 계	856,139,885	805,931,877	50,208,008	6.23%
특 별 회 계	39,628,562	41,857,578	△2,229,016	△5.33%
의 료 급 여	657,976	580,000	77,976	13.44%
마 포 농 수 산 물 장 시	7,417,005	6,323,221	1,093,784	17.30%
주 차 장	24,865,427	28,595,749	△3,730,322	△13.05%
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	5,809,811	5,579,977	229,834	4.12%
건 축 안 전	878,343	778,631	99,712	12.81%

2. 세입예산

○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)

합 계	순세계잉여금	보조금사용잔액	국·시비보조금
50,208,008	24,273,069	23,200,450	2,734,489

○ 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계	순세계잉여금	보조금반납금
계	△2,229,016	△2,505,868	276,852
의 료 급 여	77,976	19,560	58,416
마 포 농 수 산 물 시 장	1,093,784	1,093,784	0
주 차 장	△3,730,322	△3,820,689	90,367
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	229,834	165,817	64,017
건 축 안 전	99,712	32,660	64,052

3. 세출예산

○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)

합 계	자체사업		국시비 보조사업		반환금	예탁금
50,208,008	계	15,527,129	계	8,080,847	15,524,505	11,075,527
	증액	16,267,249	증액	8,586,530		
	감액	△740,120	감액	△505,683		

○ 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합계	자체사업	보조금 반환금	예비비	예탁금
합 계	△2,229,016	3,713,527	243,041	△7,258,967	1,073,383
의 료 급 여	77,976	0	77,976	0	0
마 포 농 수 산 물 시 장	1,093,784	0	0	20,401	1,073,383
주 차 장	△3,730,322	3,670,000	100,806	△7,501,128	0
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	229,834	43,527	941	185,366	0
건 축 안 전	99,712	0	63,318	36,394	0

II 일반회계

1. 세입 현황 : 변동 없음

2. 세출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산액	기정액	증감액	증감률
새 마 포 담 당 관	429,736	418,360	11,376	2.72%

3. 세출예산 세부 편성 내역

(단위 : 천원)

부서명	세 부 사 업 명	예산액	기정액	증감액
합 계		24,624	13,248	11,376
새마포담당관	법 무 행 정 의 효 율 적 운 영	24,624	13,248	11,376

III 특별회계

1. 세입예산 : 없음

2. 세출예산 : 없음

IV 검토의견

1. 일반회계 세입·세출예산

- 2024년도 제1회 새마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변동없으며

- 2024년도 제1회 새마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4억 2,973만 6,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1,836만원 대비 2.72%에 해당하는 1,137만 6,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음.

2.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

- 2024년도 제1회 새마포담당관 소관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없으며, 세출 추가경정예산액도 없음.

3.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단체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5조(추가경정예산) 및 「지방재정법」 제45조에 따라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으며 목적적 합성, 예측불가능성, 보충성, 시급성, 연내집행가능성, 한시성 등의 요건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였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심의·의결할 필요가 있음.
- 2024년도 제1회 새마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부서 자문 의뢰 건수의 급증에 따라 고문변호사 자문료와 법적 사고력 향상과 소송비용 회수 등 실무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및 소송 실무교육 강사료 등을 편성한 것으로, 자치단체가 다루는 행정영역이 커지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업무의 난이도가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소송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 민선7기보다 민선8기 고문변호사의 자문료나 소송이 증가한다는 것은 사례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구민들이 행정절차 및 처분의 신뢰성에

의구심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바, 집행부는 행정행위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됨.

-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 각 부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요건인 시급성과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추경 편성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적시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임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